

《2024. 1월 2차》
청렴메아리

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**관심**과 **참여**가 매우 중요합니다.



「공공재정환수법」 안내



관련 내용

○ 도입배경

- 공공재정(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 등)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·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

○ 부정청구 유형

- (허위청구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→ **부정이익 가액 5배**
- (과다청구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→ **부정이익 가액 3배**
- (목적외사용) 법령·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→ **부정이익 가액 2배**
- (오 지 급)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→ **미부과**

○ 부정청구 신고 방법

- 소관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
-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(www.clean.go.kr) 또는 방문·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

○ 부정수익자 제재

- 부정이익 환수(이자포함), 제재부가금(최대 5배),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

예 시

- 특정단체에서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 내용과 다르게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등 허위청구
- 어린이집 원장 등이 교사 및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과다청구
- 어린이집 원장이 내원하지 않은 원아들을 출석한 것처럼 허위 등록 후 보조금 과다청구

**부조리
신고**

- 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클릭)
- ♣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